

집합투자기구 변경 대비표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HDC채권플러스알파1호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2. 효력발생일 : 2021.01.29.
3. 주요 정정사항 : 운용역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신탁계약서]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정정 전	정정 후
<p>제18조(신주의 발행 등) ① <생략> ② 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신주인수는 지체 없이 신주의 인수가액을 <u>금전으로</u> 납입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p>	<p>제18조(신주의 발행 등) ① <생략> ② 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신주인수는 지체 없이 신주의 인수가액을 <u>현금 또는 수표로</u> 납입하여야 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2 (판매수수료) ① ~ ③ <생략> ④ 판매회사는 Class S 주식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환매하는 시점에 주주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입한 주식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u>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주식통장거래계약서에서</u>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p>	<p>제18조의2 (판매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판매회사는 Class S 주식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환매하는 시점에 주주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입한 주식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u>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u>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28조(주식의 소각) 제21조 내지 제27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 또는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소각시기는 환매 또는 매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날의 24시로 본다.</p>	<p>제28조(주식의 소각) <삭제></p>
<p>제30조(주주명부) ① <생략> ② 회사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u>한국예탁결제원에</u> 통지하여야 한다. ③ <u>한국예탁결제원은</u>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 2.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한국예탁결제원은</u> 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p>	<p>제30조(주주명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u>전자등록기관에</u> 통지하여야 한다. ③ <u>전자등록기관은</u>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전자등록기관은</u> 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56조(차입 및 보증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u>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u> 차입 당시의 회사 <u>재산총액의 100분의 10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56조(차입 및 보증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u>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및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u> 차입 당시의 회사 <u>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p>
<p>제65조(해산)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p>	<p>제65조(해산)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p>

<p>는 해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결의 3. 피흡수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7. <신 설> <p>② <생 략></p>	<p>는 해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결의 3. 피흡수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p>② <현행과 같음></p>
<p>제67조(정관의 변경) ① ~ ⑦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67조(정관의 변경)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주주는 제61조와는 별도로 제9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정관·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p>⑨ 제8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액 :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6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 및 제2호의 기간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회사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제비용(관련세금 및 분담금, 법률자문료 등) 2. 기간 : 변경시행일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p>⑩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9항 적용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주를 상대(제31조제2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주주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주주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68조(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다 또는 존립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전신·<u>모사전송</u>,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p>② <생 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u>전자우편</u>의 방법으로</p>	<p>제68조(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다 또는 존립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전신·<u>팩스</u>,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직접 또는 <u>전자통신</u>의 방법으로</p>

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에 의한다.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해당 투자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주주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에 의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칙</u>
	이 정관은 2021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 운용역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 <u>홍호덕</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정관욱	책임운용전문인력 : <u>박정훈</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정관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운용전문인력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u>홍호덕</u> → <u>박정훈</u>)
5.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 <u>홍호덕</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정관욱	책임운용전문인력 : <u>박정훈</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정관욱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 투자대상 6. 집합투자증권 등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u>수익증권</u>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6. 집합투자증권 등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u>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5) 일부환매 <u>주주(투자자)는 보유한 주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주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주권을 환매하고, 잔여주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합니다.</u>	(5) 일부 환매 <u>주주(투자자)는 보유한 주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하 삭제></u>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신설>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u>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u>

		<p>①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 시가</u></p> <p>②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u>가격</u>.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p> <p>⑥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u>로 평가</p>	<p>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p> <p>①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 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u></p> <p>②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u>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u>.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p> <p>⑥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u>로 평가</p>
--	--	--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등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p>① 주주총회의 소집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u>한국예탁결제원</u>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p>	<p>① 주주총회의 소집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u>전자등록기관</u>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p>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자산운용보고서 (3)자산보관·관리 보고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p>

[간이투자설명서] : 운용역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운용전문인력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 <u>홍호덕</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정관욱	책임운용전문인력 : <u>박정훈</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정관욱

<끝>.